

## 실증 실험 실시에 관한 규약

실증사업추진팀 오사카

### (목적)

제 1 조 이 규약은 오사카부 및 오사카시가 관할하는 시설 및 별도로 정하는 오사카 상공회의소에 등록하는 민간시설(이하 '시설'이라 함)에서 오사카부, 오사카시 및 오사카 상공회의소가 실증 실험을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실증 실험을 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협의를 및 상호협력)

제 2 조 사업자는 오사카부, 오사카시 및 오사카 상공회의소 및 해당 실증 실험에 활용하는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함)와의 사이에서 실증 실험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협의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하에서 실시해야 한다.

### (허가 신청)

제 3 조 사업자는 실증 실험의 실시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리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며, 시설의 사용 허가 및 기타 시설을 적법하게 이용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얻어야 한다.

(위험방지 등)

제 4 조 사업자는 실증 실험의 실시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필요한 위험방지 및 보험 가입을 포함한 리스크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용 부담)

제 5 조 실증 실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오사카부, 오사카시, 오사카 상공회의소 및 관리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실증 실험의 중지 등)

제6조 오사카부, 오사카시 및 오사카 상공회의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실험의 중지, 또는 중단 혹은 내용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1) 실증 실험을 계속함으로써 인해 관리자의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자연재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실증 실험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워진 경우

2 오사카부, 오사카시 및 오사카 상공회의소는 실증 실험의 내용이 사전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또는 제삼자에게 생명, 신체,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전항의 시정 요구를 사업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 또는 사업자가 제10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오사카부, 오사카시 및 오사카 상공회의소는 사업자에게 실증 실험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4 전3항의 규정에 의해 실증 실험을 중지 또는 중단하거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사업자에게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오사카부, 오사카시 및 오사카 상공회의소는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손해배상)

제 7 조 실증 실험을 실시하면서 발생한 손해 가운데 오사카부, 오사카시, 오사카 상공회의소, 관리자 및 제삼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불가항력 및 기타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아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자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단, 제 3 조에서 정하는 시설의 사용 허가 등의 조건 및 기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전조 제 4 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실증 실험을 실시하면서 발생한 손해 가운데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오사카부, 오사카시, 오사카 상공회의소, 관리자 및 제삼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사업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실적보고서 등의 제출)

제 8 조 사업자는 실증 실험 종료 후 신속하게 실적보고서 및 필요에 따라 기타

자료를 작성하고, 오사카부, 오사카시, 오사카 상공회의소 및 관리자에게 실적을 보고한다. 단, 사업자는 사업자 이외 사람의 지식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2 사업자는 법령에 근거하여 오사카부 및 오사카시가 전항의 실적보고서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실적보고를 한다.

3 제 1 항의 실적보고서 및 실적보고 시 사업자가 보고 대상에 제출한 자료와 관련하여, 사업자는 보고 대상에 대해 보고 대상이 해당 실증 실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다음 형태를 통해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며, 이를 토대로 보고 대상이 번역·번안한 2 차 저작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허락한다.

(1) 복제

(2) 공연·상영

(3) 공중송신·공중전달

(4) 구술

(5) 전시

(6) 번역·번안

4 사업자는 전항의 저작물 및 2 차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 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비밀 유지)

제 9 조 사업자는 실증 실험의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사항과 개인정보를 본 협정의 유효기간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다른 당사자의 사전 승낙 없이 제삼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되며, 실증 실험의 목적 수행에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이

이용해서도 안 된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 (1) 알게 된 시점에 이미 공공에 널리 알려진 정보
- (2) 알게 된 시점에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정보
- (3) 제삼자로부터 기밀 보유 의무를 지지 않고 적법하게 입수한 정보
- (4) 상대방의 기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 (5) 오사카부 및 오사카시가 법령에 근거하여 공개 또는 개시 등을 하는 정보

(폭력단 등 반사회적 세력의 배제)

제10조 사업자는 사업자의 대표자, 임원 또는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는 자가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폭력단원 또는 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밀접 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약에 근거한 실증 실험을 신청할 수 없다.

2 사업자는 오사카부, 오사카시, 오사카 상공회의소 및 관리자가 전항의 해당성 판단을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 조사에 협조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 등의 취급)

제11조 본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문점, 또는 본 규약과 관련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 오사카부, 오사카시 및 오사카 상공회의소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이상